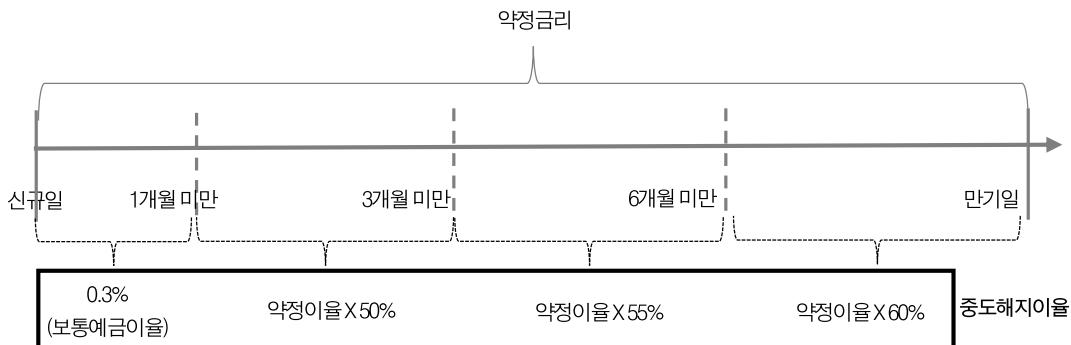


중도해지이율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가입상품에 한하여
12개월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70%가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 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4 및 제13조 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 특별중도해지 이율(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예치기간	이율
6개월 미만	가입 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가입 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가입 당시 1년제 약정이율
2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 당시 2년제 약정이율

-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의미함

기타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